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216
----------	-------

발의연월일 : 2025. 12. 12.

발 의 자 : 박상혁 · 허 영 · 김우영
정준호 · 김한규 · 이해식
한민수 · 진선미 · 최혁진
조승래 · 문정복 · 박지원
김영환 · 김주영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특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소규모 대부업체 다수를 설립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창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제공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대부업체 쪼개기 등의 방법으로 현행법상 규제를 회피하였다는 의혹이 불거짐.

현행법은 대부업등 등록 시 자산규모 등의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록 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록으로 이원화하고 있고,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의 상한을 정하는 총자산한도 규정, 금융감독원장이 영업소에 직접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규정 등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관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대부업체를 쪼개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악의적인 시도를 막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에 적용되는 규제를 전체 대부업체 대상으로 확대하여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체에 대하여도 총자산한도 규정을 확대 적용하고 금융감독원이 직권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법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금융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7조의3 및 제12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 중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을 “대부업자는”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시·도지사는 대부업자등에”를 “대부업자등에”로, “금융감독원장에게 대부업자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를 “시·도지사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직권으로 대부업자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3(총자산한도) ① <u>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는</u> 총 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이하 “총자산한도”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3(총자산한도) ① <u>대부업자는</u>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검사 등) ① · ② (생 략)	제12조(검사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시·도지사는 대부업자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대부업자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u>	③ <u>대부업자등에</u> ----- ----- ----- <u>시·도지사</u> <u>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직권으로 대부업자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u>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